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발 의 자 : 이성재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꾸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(안 제4조)

나. “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”라는 문구 추가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제55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(1) 개정조례안 : 별첨

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성주군의회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(인영의 내용)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「성주군의회 공인 조례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인영의 내용)①(생 략)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.	제4조(인영의 내용)①(현행과 같음)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